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연월일 : 2019. 6. .

발 의 자 : 강명숙 외 1명

1. 개정이유

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의안제출 기한 변경 : 회기시작 7일전 → 회기시작 10일전

(안 제18조제3항)

나.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: 운영위원회 → 의회운영위원회

(안 제3조, 안 제11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9조, 안 제45조,

안 제47조, 안 제49조, 안 제73조)

다. 띄어쓰기 규정 반영

3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4. 입법예고 : 필요없음

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

6. 개정규칙(안) : 별첨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”를 “제71조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법 제63조제1항”을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의2 본문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 전단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본문 중 “7일전”을 “1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소관상임위원회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의4 단서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41조제4항 중 “다른의원”을 “다른 의원”으로 한다.

제45조의2제2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단서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49조 단서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5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원아닌”을 “위원 아닌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 회의록”을 “위원회 회의록”으로 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 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71조 등에 따라 <u>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</u> 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71조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등록) 서울특별시 <u>마포구의회 의원</u> 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	제2조(등록) ----- <u>마포구의회</u> 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의석배정) ① <u>의원</u> 의 의석은 의장이 <u>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 ② (생략)	제3조(의석배정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</u> 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--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-- ----- -----.
제11조(개의)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<u>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.	제11조(개의) ----- -----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.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 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<u>법 제63조제1항</u> 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· ④ (생략)	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</u> -----.
제15조(의사일정) ① (생략)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<u>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③ (생략)	제15조(의사일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-----.
제15조의2(연간 의회운영의 기본 일정 수립) 의장은 <u>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.	제15조의2(연간 의회운영의 기본 일정 수립) -----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의사일정의 변경)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	제16조(의사일정의 변경) ----- -----

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제18조(의안의 제출 · 발의) ① ·
② (생략)
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(생략)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,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----- 의회운영위원회 -----

-----.

제18조(의안의 제출 · 발의) ① ·
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----- 10일 전 -----
---.
-----.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-----

----- 소관 상임위원회 -----
-----.

-----.

<p>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의회 운영위원</u> <u>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9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<u>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-- ----- ----- . ----- ----- <u>의회 운영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1조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 ① ~ ③ (생략) ④ 감표위원은 <u>다른 의원</u>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</p>	<p>제41조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다른 의원</u> ----- -----.</p>
<p>제45조의2(회의의 비공개) ① (생략) ② 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u>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5조의2(회의의 비공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의회 운영위원회</u>-----.</p>
<p>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</p>	<p>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----- -----</p>

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49조(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)
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 다만,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예외로 한다.

제53조(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.

제58조(위원회 회의록)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1. ~ 11. (생 략)

② · ③ (생략)

의회운영위원회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
취) ----- 위
원 아님 -----
----.

제58조(위원회 회의록) ① ----- -- 위원회 회의록----- 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령】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